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9
----------	----------

제출일자	2015. 2. 23.
제출자	표 주숙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와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나. 예산 조치 : 2015년 추경예산 확보

다. 집행부의견조회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2. 23 ~ 3. 2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 나. 공공이용시설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0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란 관내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제14조(활동지원)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유공자표창) 군수는 다른 서포터즈의 모범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6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업무 관련 실·과·사업소장
2.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4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로 본다.

제3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파트너즈는 이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 서포터즈로 본다.